|  |  |  |
| --- | --- | --- |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재세[2012]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청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기간 중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의 증치세 납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실시방법>(재세[2011]111호) 및 현행 증치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첨부문건 확인바람)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첨부문건: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12월 31일  첨부문건: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본점 시범납세인과 그 분지기구는 본 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2. 본점은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발생한 증치세 납부세액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고 이미 납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세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국고에 납부한다. 본점이 화물판매, 가공수리 및 조립용역에 종사한 경우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법규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3.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본점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취득하는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2)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취득한 매출액:  산식: 매출액 = 과세서비스 영업액 / (1 + 증치세 적용세율)  과세서비스 영업액은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영업액을 의미한다.  증치세 적용세율은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실시방법>(이하 “시범 실시방법”으로 약칭)에서 정한 증치세 적용세율을 의미한다.  4.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매출세액은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과 <시범 실시방법>에서 정한 증치세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매입세액은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가공, 수리, 조립용역 및 과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불하거나 부담한 증치세 세액을 의미한다.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전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종합 정산하지 않는다.  6.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한 경우,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과 예비징수비율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증치세 납부세액 =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 예비징수비율  예비징수비율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화물 판매, 가공, 수리,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규정에 따라 해당 귀속지역에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신고 납부한다.  7.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고 당기에 이미 납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세액은 본점의 당기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8. 본점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와 관련된 기타 증치세 관련 사항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상하이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 전개와 관한 통지>(재세[2011]111호) 및 기타 증치세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9. 본점과 분지기구 시범납세인의 증치세 관련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제정한다. |  | **关于印发《总分支机构试点**  **纳税人增值税计算缴纳**  **暂行办法》的通知**  财税[2012]8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解决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试点期间总分机构试点纳税人缴纳增值税问题，根据《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1]111号）和现行增值税有关规定，我们制定了《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计算缴纳暂行办法》（见附件），现予以印发。  　　附件：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计算缴纳暂行办法  财政部、国家税务总局  　　2012年12月31日    　　附件：    **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计算缴纳**  **暂行办法**    　　一、经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批准的总机构试点纳税人，及其分支机构按照本办法的规定计算缴纳增值税。  　 二、总机构应当汇总计算总机构以及其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的应交增值税,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已缴纳的增值税和营业税税款后，在总机构所在地解缴入库。总机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按照增值税暂行条例及相关规定申报缴纳增值税。  　 三、总机构的汇总应征增值税销售额由以下两部分组成：  　 （一）总机构及其试点地区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的应征增值税销售额；  　 （二）非试点地区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的销售额。计算公式如下：  　 销售额＝应税服务的营业额÷（1＋增值税适用税率）  应税服务的营业额，是指非试点地区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的营业额。  增值税适用税率，是指《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以下简称《试点实施办法》）规定的增值税适用税率。  　 四、总机构汇总的销项税额，按照本办法第三条规定的应征增值税销售额和《试点实施办法》规定的增值税适用税率计算。  　 五、总机构汇总的进项税额，是指总机构及其分支机构因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而购进货物或者接受加工修理修配劳务和应税服务，支付或者负担的增值税税额。总机构及其分支机构用于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之外的进项税额不得汇总。  　 六、试点地区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按照应征增值税销售额和预征率计算缴纳增值税。计算公式如下：  　 应缴纳的增值税＝应征增值税销售额×预征率  　 预征率由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并适时予以调整。  　 试点地区分支机构和非试点地区分支机构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按照增值税暂行条例及相关规定就地申报缴纳增值税；非试点地区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按照现行规定申报缴纳营业税。  　 七、分支机构发生《应税服务范围注释》所列业务当期已缴纳的增值税和营业税税款，允许在总机构当期增值税应纳税额中抵减，抵减不完的，可以结转下期继续抵减。  　 八、总机构以及试点地区分支机构的其他增值税涉税事项，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1]111号）及其他增值税有关政策执行。  　 九、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具体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 |